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증인 등에 대한 통역인 지정〉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38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희 · 권영진 · 서천호 · 김기웅 · 엄태영 · 이성권
김상훈 · 진종오 · 이종배 · 유용원 · 김석기 · 김기현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6. 4. 15.

3. 회 부 일 : 2026. 4. 16.

※ 의안번호 : 1833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

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게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생 략) <u><신 설></u>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¹⁾는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하나로서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통역인 지정이나 통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 등으로 출석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선서·증언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진술 등을 할 때 통역인이 통역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²⁾

한편, 사법절차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통역인의 통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³⁾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통역인의 통역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을 안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인 증인의 통역에 관한 사항은 선례로 인정되어 현재 통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017

2) 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p.848~857

3)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4) 개정안은 통역인 지정 주체로 위원장만 명시하고 있는데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출석할 수 있으므로 통역인 지정 주체에 의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